

[일련번호 : 9]

양 천 구 주 의 요 구

제 목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소홀

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♡♡동

내 용

1. 업무개요

♡♡동은 「주민등록법 시행령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.

2.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

「주민등록법 시행령」 제36조(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)에 따르면 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려면 그 발급대상자에게 12개월 이상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통지하되, 그 발급대상자의 무단전출 등으로 인하여 통지서를 내줄 수 없으면 이를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, 통지하거나 공고한 사실을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여야 한다.

「주민등록 사무편람」(행정안전부)에 의하면 17세가 되는 달에 해당 월의 신규 17세자(거주자, 재외국민)명부를 작성하고 그 명부에 의하여 발급대상자에게 1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영 제29호서식(주민등록증발급통지서)에 의하여 통지한다. 다만, 발급통지를 한 후 수취인 불명, 수취거절 등으로 발급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읍·면·동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(14일 이상)하도록 되어있다.

3.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

♣♣동은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반송되어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.

[표]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소홀 내역

연번	등기발송일자	성명	생년월일	배달여부	공고여부	부적정 내역
1	240320			반송	미실시	공고 미실시
2	240620			반송	미실시	공고 미실시
3	240920			반송	241118실시	즉시 공고하지 않고 지연
4	240920			반송	미실시	공고 미실시

4.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

♣♣동은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.

5. 조치할 사항

♣♣동장은

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라며,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·감독하시기 바랍니다. (주의)